

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[별표 4] <개정 2026. 5. 26.>

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(제12조 관련)

1.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 - 가.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·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
 - 나. 홍수 등으로 논·밭에 쌓인 흙·모래를 제거하는 행위
 - 다. 경작 중인 논·밭의 지력(地力)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(흙 바꾸기)·객토(새 흙 넣기)를 하는 행위(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)
 - 라.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(머목의 행위와 병행할 수 있다)
 - 마.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
 - 바.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(땅고르기),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(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)
 - 사. 채소·연초(건조용을 포함한다)·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닐하우스(이하 "농업용 비닐하우스"라 한다)를 설치(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하는 행위
 - 1)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재·철제·폴리염화비닐(PVC)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,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,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(FRP)이 아니어야 한다. 다만, 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(FRP)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.
 - 2)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,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.
 - 3) 기초는 가로,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센티미터 이하인 규모에 한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으며,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(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)이어야 한다.
 - 아. 농업용 분뇨장(탱크 설치를 포함한다)을 설치하는 행위
 - 자.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(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울타리를 포함한다)을 설치하는 행위
 - 차.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
 - 카. 밭 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하여 토굴 등을 파는 행위
 - 타.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
 - 파. 축사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(일반인에게 배합사료를 판매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)
 - 하. 기존의 대지(담장으로 둘러싸인 내부를 말한다)에 15제곱미터 이하의 간이 축사를 설치하는 행위
 - 거.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분뇨장에 취사·난방용 메탄가스 발생시설을 설치하는

행위

- 너.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(壁體) 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
 - 더.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, 난방용 기계실,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
 - 러.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지 등으로의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축사에 딸린 가축방목장을 설치하는 행위
 - 머.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(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)으로 성토하는 행위
 - 버. 생산지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의 곡식건조기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
 - 서. 축사운동장에 개방형 비닐하우스(축산분뇨용 또는 톱밥발효용을 말한다)를 설치하는 행위(축사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)
 - 어.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논에 참깨·우렁이·지렁이 등을 사육하거나 사육을 위한 울타리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
 - 저. 농산물수확기에 농지에 설치하는 3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용 야외 좌판(그늘막 등을 포함한다)을 설치하는 행위
 - 처. 삭제 <2015.2.5.>
 - 커.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단순한 준설 행위(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)
 - 터.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·이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
 - 허.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, 과수원 또는 임야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. 이 경우 양봉통을 설치하면서 그늘막 등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
2. 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- 가. 사용 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부엌이나 목욕탕으로 바꾸는 경우 등 가옥 내부를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행위
 - 나. 지붕을 개량하거나 기둥벽을 수선하는 행위
 - 다. 외장을 변경하거나 칠하거나 꾸미는 행위
 - 라.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
 - 마. 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행위
 - 바.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
 - 사.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·축대(옹벽을 포함한다)를 설치하는 행위(택지 조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)
 - 아.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(광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설치하는 행위

- 자.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는 행위
- 3. 마을공동사업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 - 가. 공동우물(「지하수법」에 따른 먹는물용 지하수를 포함한다)을 파거나 빨래터를 설치하는 행위
 - 나. 마을도로(진입로를 포함한다) 및 구거(溝渠)를 정비하거나 석축(石築)을 개수·보수하는 행위
 - 다. 농로를 개수·보수하는 행위
 - 라. 나지(裸地)에 녹화사업을 하는 행위
 - 마. 토관을 매설하는 행위
- 4. 비주택용 건축물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 - 가. 주택의 경우와 같이 지붕 개량, 벽 수선, 미화작업 또는 창문 설치를 하는 행위
 - 나. 기존의 종교시설 경내(공지)에 종각·불상·석탑·예수상 또는 기념비석을 설치하는 행위
 - 다. 기존의 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
 - 라. 종교시설의 경내에 일주문(一柱門)을 설치하는 행위
 - 마. 임업시험장에 육림연구·시험을 위하여 임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
- 5.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축사·잠실(蠶室) 등의 기존 건축물을 일상 생업에 필요한 물품·생산물의 저장소나, 새끼·가마니를 짜는 등의 농가부업용 작업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 - 나.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부업의 범위에서 상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(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)
 - 다. 주택의 일부(종전의 부속건축물을 말한다)를 다용도시설 및 농산물건조실(건조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)로 사용하는 경우
 - 라. 새마을회관의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
- 6. 기존 골프장을 통상적으로 운영·관리할 목적으로 골프장을 유지·보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 - 가. 차량정비고나 부품보관창고 부지의 바닥 포장
 - 나. 잔디의 배토(培土)작업에 소요되는 부엽토 및 토사를 일시적으로 쌓아 놓는 행위
 - 다. 골프장 배수로 정비
 - 라. 잔디를 심고 가꾸는 행위
 - 마. 티 그라운드의 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
 - 바. 벙커의 위치·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
 - 사. 코스 내 배수 향상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절토·성토하는 행위

아. 염해(鹽害: 염분 피해)를 입은 잔디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통상적인 성토

자. 작업도로 변경 및 포장

7. 재해의 긴급한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
가.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죽목(竹木) 베기(연간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)

나.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(竹木) 베기(연간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)

8. 기존 건축물의 대지(적법하게 조성된 대지로 한정한다) 안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

9.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대체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국유림·공유림 또는 자연공원(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
가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산림의 관할 행정청이 하는 다음의 행위

1)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국유림경영계획 또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조림(造林) 및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

2)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임도(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), 산불예방·진화시설 등 산림관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

3)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의3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산림을 복원하는 행위

4) 「사방사업법」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방시설을 유지·관리하거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, 식물을 파종·식재하는 행위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변경

5)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 방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죽목의 벌채

나. 「자연공원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(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)이 하는 다음의 행위

1)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원계획(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경된 공원계획을 포함한다)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는 행위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 이용에 필

요한 행위

- 2)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원별 보전·관리계획에 따라 동식물 보호, 훼손지 복원,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하여 자연공원을 보전·관리하는 행위
- 3)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자연공원 내에서 재난·재해를 예방 또는 복구하는 행위
- 4)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 방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죽목의 벌채